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56

2021. 10. 1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1. 김진홍 의원 등 5명

나. 상정의결

- 제29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0. 1.)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진홍 의원)

○ 관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각각 「물환경보전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을 반영(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을 반영(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3조, 안 제7조 및 제9조제2항)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김진홍 의원 등 5명으로부터 관계 법령 제명의 변경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제1조(목적)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1]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2]을 규정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2조(적용범위)제1항은 현행 조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물환경보전법」[3] 「대기환경보전법」[4] 「소음·진동관리법」[5] 및 「토양환경보전법」[6]

---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13. 10. 22.>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

등 관계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이동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구분하여 환경오염행위 적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각 호의 설명 및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사례, 신고건수 및 포상 지급 실적 등 설명은 필요해 보임

○ 그 밖의 사항은 관련 법 제명 등을 현행화하거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사항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현재 강남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점검 현황은 어떠한지

○ 답 변 : 대기·폐수·특정 토양오염 관련 배출 시설들이 686개소 정도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점검 중에 있고 연말까지 총 30%정도의 시설을 점검 예정임

○ 질 의 :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 및 포상 지급실적은 어떠한지

○ 답 변 : 본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된 후 주민 신고는 9건이 접수되었고 대부분 신고내역은 자동차 매연신고이며 총 지급된 포상금은 12만 6천 원 정도임.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역 없음

○ 질 의 : 서초구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드론을 이용해서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감시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 답 변 :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에 도입하도록 하겠음

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

발의연월일 : 2021. 10. 1.
발 의 자 : 김진홍·이재민·복진경·최남일·이향숙(이상5인)

1. 제안이유

관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각각「물환경보전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을 반영(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을 반영(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3조, 안 제7조 및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적용범위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1. 폐수 무단방류

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

정상가동

3.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4.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환경오염신고제”를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누설하여서”를 “누설해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신 설>	제2조(적용범위) ① 적용범위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1. 폐수 무단방류 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

	유출 4.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써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 ---------- ---------- ----------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 ---------- ---------- ---------- ----------.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격려품의 지급) ---------- 환경오염행위 신고제----------.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생략) ②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누설해서----------.